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6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김성원·고동진·구자근

권성동 · 김선교 · 김소희

김태호 • 박충권 • 서일준

이인선 · 임이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68.2%)이 월등히 높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 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거·생활·교육·취업"을 "주거·생활·교육·취업"을 "주거·생활·교육·취업·진로·심리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5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③ 국가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급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8조의2)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8조의2(자립정착금의 지급기준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기준을 수립·고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 수립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2의 제목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을 "(자립지원전

담기관 및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통합자립지원전담당센터"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립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생 략)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u>다.</u>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u>주거·생활·</u>	1 <u>주거·생활·</u>
교육·취업 등의 지원	교육 • 취업 • 진로 • 심리상담
1의2. ~ 5. (생 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2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3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	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u>5년</u> 0)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생략)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6년

- 4. (현행과 같음)
- ③ 국가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별 심층상 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의 소재 파악이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업자에게 지급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u>⑤</u> 제1항 및 제3항-----

-----.

제38조의2(자립정착금의 지급기 준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매년 제38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 당 지급 기준을 수립·고시하 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시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 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 수 립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u>제38조의2</u>(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② (생 략)

<신 설>

- 제38조의3(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 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매월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u>제1항</u>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 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⑤</u>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및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의 설치
<u>· 순영</u>) ①
<u>설</u>
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
하고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
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
지원전담기관 및 통합자립지원
전담센터